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50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위성곤 · 정춘생 · 김정호
황정아 · 양부남 · 임오경
백혜련 · 부승찬 · 박홍근
이해식 · 이정현 · 김한규
김종민 · 문대림 · 한정애
강득구 · 최혁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는 관광·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고급 과학기술 인재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이른바 ‘인재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인력 유출은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제주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본 오키나와는 지리적으로 변방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OIST(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를 설립하여 학과 간 장벽 없는 조직 운영과 국제화를 기반으로 세계적 석학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적 연구 거점으로 성장한 바 있음. 또한 연구비를 포괄적으로 지

원하는 방식(Block Funding)을 통해 연구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한 사례로 평가됨.

제주 또한 영어교육도시, 무비자 입국 제도 등 국제적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해외 석학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함.

이에 OIST 모델을 참고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학과 구분 없는 융합 연구 체계를 도입하며,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가 연구비를 포괄적 출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 유치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인재 양성 → 지역 취·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를 지식기반 산업 중심 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교원, 학생 및 연구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국제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석학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교육 지원 등 정주 지원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어 개원 준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4조의2 신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제1항 “관광·통과”를 “관광·교육·연구·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에서 교육·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국 절차 및 체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도지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창업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하거나 관련 비자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편 제3장에 제3절(제234조의2부터 제234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제234조의2(설립) ① 제주자치도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산업의 지식 기반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이하 “제주과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주과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34조의3(운영의 독립성 및 조직의 특례) ①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제주과기원은 학문 간 장벽 없는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학과 또는 학부를 두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주과기원은 연구단위 중심으로 운영하며, 그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4(임원의 구성 등) ① 제주과기원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총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회는 국제적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되,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제적 교육·연구 기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이사회는 제2항에 따른 이사, 감사 선임과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5(교원 및 연구원) ① 제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한 경우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 ② 제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이 경우 연구원의 유형과 임용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제주과기원은 교원 및 연구원을 임용할 때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와 처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주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234조의6(학위과정 등) ① 제주과기원에 박사 과정을 둔다.

- ②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 구성된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비율이 각각 전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 수여, 입학 자격 및 방법 등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7(제주과기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시설의 우선 공급, 의료·문화 지원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연구원의 자녀는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된 국제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우선 입학할 수 있다.

⑤ 제주자치도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34조의8(출연금)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9(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 ① 국가는 제주과기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구비 총액을 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세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학칙에 따라 이를 연구단위의 연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0(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과기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34조의11(기금의 설치 등) ① 제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영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연구 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할 때에는 제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
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3(개발센터의 지원 특례) ① 개발센터는 제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주과기원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건축

2. 교원·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정주지원시설의 조성 및 운
영

3. 제주과기원의 운영 및 연구활동을 위한 재원 출연

② 개발센터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과기원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234조의14(다른 법률의 준용) 제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각각 “제주과기원”으로 본다.

제4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른 설립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설립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제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준비위원회는 제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제23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임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준비위원회는 제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는 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⑥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u>관광·통과</u>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 --- <u>관광·교육·연구·통과</u>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u>법무부장관은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에서 교육·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국 절차 및 체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u><신 설></u>	⑤ <u>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u>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과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도지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창업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하거나 관련 비자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절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제234조의2(설립) ① 제주자치도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산업의 지식 기반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이하 “제주과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주과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34조의3(운영의 독립성 및 조직의 특례) ①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제주과기원은 학문 간 장벽 없는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

<신 설>

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학과 또는 학부를 두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주과기원은 연구단위 중심으로 운영하며, 그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4(임원의 구성 등) ①

제주과기원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총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회는 국제적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제적 교육·연구 기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가진 사람

<신 설>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격을 갖춘 사람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
다.

④ 이사회는 제2항에 따른 이
사, 감사 선임과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5(교원 및 연구원) ①
제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
· 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
요한 경우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
구원을 둔다. 이 경우 연구원의
유형과 임용 방법 등은 정관으
로 정한다.

③ 제주과기원은 교원 및 연구
원을 임용할 때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

<신 설>

<신 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
수와 처우를 달리 정할 수 있
다.

④ 제주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
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234조의6(학위과정 등) ① 제주
과기원에 박사 과정을 둔다.

②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 구성된 교
원, 연구원 및 학생의 비율이
각각 전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
다.

③ 학위 수여, 입학 자격 및 방
법 등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7(제주과기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시설의 우선 공급, 의료·문화지원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연구원의 자녀는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된 국제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우선 입학할 수 있다.

⑤ 제주자치도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신 설>

<신 설>

있으며,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34조의8(출연금)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9(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 ① 국가는 제주과기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구비 총액을 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세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학칙에 따라 이를 연구단위의 연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0(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과기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4조의11(기금의 설치 등) ① 제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신 설>

<신 설>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
육·연구 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2(국유재산·공유재산
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제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
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
가 및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3(개발센터의 지원 특
례) ① 개발센터는 제주과기원
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신 설></u>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 략) <u><신 설></u>	<u>수행할 수 있다.</u> <u>1. 제주과기원의 교육·연구 인</u> <u>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조성</u> <u>및 건축</u> <u>2. 교원·연구원 및 그 가족 등</u> <u>을 위한 정주지원시설의 조성</u> <u>및 운영</u> <u>3. 제주과기원의 운영 및 연구</u> <u>활동을 위한 재원 출연</u> <u>② 개발센터는 제1항의 사업을</u> <u>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제주과기원에 출연 또는 출자</u> <u>할 수 있다.</u> <u>제234조의14(다른 법률의 준용)</u> <u>제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u> <u>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u> <u>「한국과학기술원법」과 「민</u> <u>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u> <u>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u> <u>술원”은 각각 “제주과기원”으</u> <u>로 본다.</u>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② 제주과기원의 임직원은</u> <u>「형법」 제129조부터 제132</u>
--	--

<u>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